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임종국 의원 외 10명
- 나. 의안번호: 제1313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2. 5.
- 라. 회부일자: 2020. 2. 12.

2. 제 안 사 유

-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이를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“출연금”을 “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).
 - 출연금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- 기금전출금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
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의2,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본 기금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자치법」을 근거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.
- 본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운용됨. 2020년 기준(2019.7)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수입항목으로 전입금, 보조금, 차입금, 융자금 회수, 예탁금 원금 회수, 예치금 회수, 예수금,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총 9가지로 구분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“출연금¹⁾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, 본 개정안에서는 이를 “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그러나 “기금전출금”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,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이미 “전입금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